

사실보도와 진실보도

김 지 운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진실보도」는 내용의 진부에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충실히 보도하는 형태인 경우 「사실보도」와 다를 바 없지만 진부를 가리고 허구를 드러내기 위해 비시사적 배경정을 추가하여 보도되는 사실들과 이 추가 정보들을 근거로 해서 객관적으로 평정할 때 「사실보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보도형태가 된다. 이러한 사실보도는 단적으로 말해서 조사적 해설보도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다.

I. 머릿말

오늘날의 대중매체들, 특히 인쇄 매체들이 시사적인 사건, 사태, 상황 등을 충분하고 정확히 보도하고(사실보도), 보다 폭 넓은 맥락 속에서 「사실 보도로서의 뉴스」의 의의와 의미를 제대로 파헤치고(해설보도) 그리고 이해관계, 광고주, 압력단체, 관현 등에 상관없이 활력과 건전한 이지와 높은 도덕적 목적의식을 가지고 논평하고(사설과 논평) 있는 것인가? 이같은 의문의 제기는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될 수 없음은 물론, 우리의 언론 기관들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인쇄매체의 독자들과 전파매체의 청취자 및 시청자들이 그 절대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통계 숫자들이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간접적으로는 정보와 오락 제공원으로서의 대중매체들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일반 수용자 대중의 언론에 대한 신임과 존경이 「의존도」에 상응해서 높아져가고 있는지는 저으기 의심스럽다. 사실보도, 해설, 논평에 있어서의 부정확, 불공정, 부주의로 인한 과오, 거두절미한 인용, 센세이셔널리즘, 파당적 편향, 오도적 인상, 속단적 일반화, 프라이버시 침해, 명예훼손 등에 대해 비난과 비판의 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실보도」만 하더라도 시간(마감), 공간(지면이나 방송의 에어타임), 그리고 경제적 자원(예산) 등 보도업무에 따르는 원천적 제약 때문에 「충분하고도 정확한 사실보도」를 실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실보도」는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허둥지둥 저널리즘」(Journalism in a hurry)이 되기 십상이고, 지면과 에어 타임의 불충분 때문에 「불충분한 저널리즘」이 되기 쉽고 경제적 자원의 제약 때문에 단편적 취합을 면하기

어렵다. 이같은 원천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제 2 차세계 대전후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제기함으로써 이른 바 「사회책임론」을 촉발시킨 「허친스 위원회」(공칭은 언론자유위원회)는 단순한 「사실보도」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허친스 위원회」는 사회가 언론에 대해 요구해야 할 다섯 가지 조건들을 들고, 본고의 논제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시사적인 사건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맥락에 관조해서 그 사건들을 진실되고 포괄적이고 이해할 수 있게끔 기술, 보도」하는 동시에 「그 당일의 정보에 충분히 접하도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적 보도와 진실보도의 견비를 사회가 언론에 기대하고 있음을 적시해 주고 있다.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정치평론가인 월터 리프만(Walter Lippmann)도 60 여년 전에 저술한 그의 「Public Opinion」에서 다음과 같이 「사실보도」와 「진실보도」를 양분하고 있다. 즉, 「사실보도」는 「사실, 선전, 풍문, 귀뜸과 실마리, 희망, 그리고 우려 등 실로 믿을 수 없이 잡다한 합」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독자들의 판단에 이바지하는 현실의 진실상 전달이라기 보다 「사건의 발생신호 구실을 한다」는 것이며, 이에 반해 「진실보도」(그는 the function of truth 라 표현)는 「가려진 사실들을 백일하에 드러내고, 그 가려진 사실들을 서로 연관시켜 묶고, 그리고 사람들이 행동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현실실상을 보여주는 데 있다」고 했다. 이에 반해 충실한 사실보도는 곧 진실보도로 간주하는 논자들도 있다. 본고에서는 앞질러 말하면 「사실보도」와 「진실보도」는 부분적으로 겹치기도 하지만 확연히 구분될 수 있는 면도 있다고 보고, 사실보도와 구분되는 면의 진실보도를 지향하는데 역점을 두어 논하고자 한다. 우선 「사실보도」라 할 때, 해설, 사설, 논평, 비평, 특집기사, 인터뷰기사, 오락물 등과 구분되는 저널리즘의 한 체라고 생각하면 그 본질을 규명할 수 있다. 즉 어떤 사건, 사태, 상황, 쟁점 등을 「있는 그대로」 윤색없이 표면적이고 일차원적이며 나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실의 「객관적」인 기술에 그치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보도」라 할 예 어떤 사건, 사태, 상황, 쟁점 등을 보도함에 있어 그 있는 그대로의 진상 또는 실상을 얼마만큼 충실하고 근사하게 보도하느냐에 따라 「진실보도」를 논한다면 이 점에서는 「사실보도」와의 구분이 필요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의 「진실보도」는 진리나 허위와는 구분되는 단순한 진상이나 실상의 충실하고 근사한 보도이지, 결코 진위, 허실, 조작, 가식 등을 들추어내서 밝히는 「진성」의 진실보도는 아니다.

II. 「사실보도」와 그 문제점

많은 학자들과 언론종사자, 매체 평론가들과 관심있는 사람들이 비록 단편적이긴 하지만 그 본질을 규명케 하는 어구로 「사실보도」를 표현 또는 비판해 왔다. 몇 가지 들어보면 문자 그대로 순수한 사실보도(report of sheer facts), 일차원적-표면적 사실의 보도(one-dimensional surface facts), 피상적 사실상 (surface factuality), 조사·추구적 보도에 대한

속기록적 보도(stenographic reporting), 비파당적인 사실적 정확성추구(nonpartisan pursuit of factual accuracy), 무감정 · 무표정한 객관성(dead-pan objectivity), 피동적 객관성의 본보기(Paragon of Passive objectivity), 꾸밈없는 정확한 보도(bald and exact reporting), 가시적인 사실만의 보도(visible facts),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이 아닌 단순한 곁핍기로 알기(acquaintance-with, not knowledge-about), 아무 것도 섞지 않은 순수한 뉴스(straight news), 그리고 불편당의 공정한 보도(impartial and fair reporting), 명명백백한 것들에 대한 단순한 사실적인 보도(mere factual reporting of the obvious), 편향 · 역점의 강약 · 윤색없는 뉴스의 제공(news presented without slanting shading and tinting) 등이다. 이런 단편적이면서도 본질의 정곡을 찌른 표현들을 종합하기만 한다면 그것 이상으로 훌륭한 「사실보도」의 정의도 없을 것이다. 「사실보도」의 기본 아이디어는 충실히 나열 전달되는 「자명한 사실들이 스스로 증명하게 한다」(Let facts speak for themselves)는 데에 있는데 많은 「사실보도」에 있어 스스로 자명함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함은 체언을 요치 않는다. 특히 보도의 대상이 복잡다단한 사태, 분쟁 당사자들의 엇갈린 주장, 수없이 많은 문제들에 대한 정치 지도자들과 관료들의 발언과 발표 등일 경우 「자명」은 기대하기 어렵다. 리프만의 말을 다시 인용하면 극히 한정된 경우에 한해서 뉴스(사실적인 보도)가 진실과 합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 예컨대 운동경기의 기록이나 선거의 계표결과 등 - 일반적으로 뉴스 보도들의 「문제의 진상」(진위와 허실을 추구하는 결과로서 얻는 진상을 말함)을 드러낸다가 아니라 밝혀낼 것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의 말대로 「사실보도」는 사건이나 사태의 「발생 신호」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리프만과 같이 사실보도를 「사건의 발생신호」로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규정짓지 않는다 해도, 이 보도형태의 발생원인이 정론신문 시대와 경영주·편집인 중심의 저널리즘 시대의 뉴스와 의견의 혼돈, 이해관계와 정치이념에 맞춘 편향된 뉴스에서 벗어나자는데 있었으므로 허실을 가리거나 진위를 추구하는 따위는 끼어들 여지가 없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때문에 「순수한 사실들」의 나열- 「모든 관계 당사자와 뉴스원을 명시하는 가운데 냉정하고 사심없이 일련의 사실들을 나열하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보도」가 하나의 규준적 보도로 면면히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체제가 많은 경우 「문제의 진상」(the truth of the matter)을 전달하여 독자, 청취자, 시청자들에게 결정과 행동의 근거가 되는 바탕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는데 바로 문제점이 도사리고있는 것이다. 미국 당대의 대언론인이자 매체비평가인 애릭 세버레이드(Eric Sevareid)는 「사실보도」의 한가지 주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즉 「우리들의 무미건조한 일차원적인 뉴스처리 허실을 가려내려 하지도 않고 허위와 진실, 은밀한 책략과 공명정대한 헌책, 조작과 진리가 누구에 의해서 행해지고 발설되는가에 따라 뉴스처리에서 진실(truth)과 똑같이 새빨간 거짓말도 대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진다. 이런 식의 뉴스처리는 바보들의 영향력을 현자들의 영향력 수준에 까지, 무식한 자를 유식한 사람의 수준에 까지, 그리고 악인을 양식있는 사람의 위치에 까지 격상시켜 왔다.」 진위를 추구하지도 않고 똑같은 중요도로 취급을 받고 심지어 양화가 악화에 밀려난다면

「사실보도」의 문제점은 심각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보도」에 있어서는 허위, 날조, 음모, 책략, 조작 등이라도, 또 취재보도자가 그러한을 간파한다 하더라도 특정인- 이른바 보도가치가 인정되는 인물 - 에 의한 것이라면 보도되는 것이 상례이다. 그리이스의 수도 아테네에서 발행됐던 카티메리나지의 여류발행인 블라코스가 파파도폴로스군사정권하에서 보도의 자유는 물론 「보도하지 않을 자유」마저 빼앗긴 후 차라리 신문발행을 자진 중단한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보도하지 않을 자유」마저 없는 상황 하에서는 「사실보도」의 문제점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한가지 실례를 매카디즘(McCarthyism)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대중매체 연구자인 엘머 데이비스(Elmer Davis)는 나날이 강도와 열기를 더해가는 매카디(Mccarthy) 상원의원의 발표와 지탄이 연일 전단제목으로, 그리고 많은 방영시간을 차지하여 대대적으로 「사실보도」된 데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미국언론의 일각에서 「무감정 · 무표정한 객관성」에 입각한 「사실보도」에 대한 불만과 도전의 시발점을 매카디 상원의원에게 언론이 「이용」당한 반성에서 찾고 있다. 그는 특히 「만사를 정직하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장 낮찍이 두터운 거짓말장자들의 속임수에 일반대중을 내맡기는 허구의 객관성」을 통렬히 비판하고 이른바 「사실적인 뉴스」란 왜곡된 뉴스에 그치지 않고, 더욱 나쁜 것은 진실(진리)에서 거리가 먼 거짓말 외의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애릭 세버레이드(Eric Sevareid)도 미국의 저널리스트들이 매카디 상원의원이 말하고 행한 바를 곧이 곧대로 「사실보도」하는데 그침으로써 그들은 「객관적인 저널리즘」에 충실하기는 커녕 엄청난 거짓말을 재생하는데 그쳤다고 맹공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진실, 즉 매카디 상원의원의 진의가 무엇인지는 그가 발설하는 특정내용이나 행동만으로는 분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언론이 그에게 지각없을 만큼 놀아났다는 반성에는 컨센서스가 이뤄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거짓말의 재생」론이 나왔지만 언론에 가해져 온 비판 중 주요 대목의 하나가 「거짓말 전달」이다. 그래서 영국의 외교관이며 시인인 헨리 워턴(Henry Wotton) 경이 「특명전권사신은 자기 나라를 위해 외국에 가서 거짓말을 하도록 파견되는 덕망있는 인물이지만 뉴스기사작성자는 자기자신을 위해 국내에서 거짓말을 하는 덕없는 인물에 불과하다」고 질책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겠다. 백악관의 대변인이 「3 급절도 사건」으로 규정지은 워터 게이트 사건이 대통령의 사임까지 몰고 온 긴 시간동안 미국언론이 스캔들의 진상을 추적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대통령으로부터 보좌관, 각료들에 이르기 까지 사건을 은폐하기위해 쏟아져 나온 거짓을 충실히 「사실보도」했기 때문에 미국민과 세계를 어리둥절케 했다. 사건발생 3 일 후에 백악관 최고보좌관과 사태수습책을 숙의한 사실이 밝혀졌으나 닉슨 대통령의 주장은 그로부터 9 개월후인 73 년 3 월 21 일까지 사건의 진상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데 일관했으며 의회에서 탄핵이 발의될 때까지 2 년 동안 허위의 발표, 기자회견, 진술이 계속됐으며, 그것들이 진위와 허실의 추구(truth-seeking)와는 별도로, 충실하게 「사실보도」됐었다. 이미지 연구의 권위인 다니엘 부어스틴 (Daniel Boorstin)은 인위적으로 연출되는 「사이비사건」(pseudo event)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나 그의 고위보좌관이나 각료가 연출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실보도」돼야 하는 「공사태」라고 개탄하고, 그런 의사 사건에서는 진실이나 거짓이든 가릴 것 없이 같은 지위를 차지하는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의견이나 공식 발표를 「사실보도」하는데 있어 객관성의

원칙이 요구하는 기법에 따른다면, 어디까지나 표명된 의견이나 공표된 내용을 「곧이 곧대로 정확히」 전달하는데 있지, 그 진실성(거짓 아닌 진실의 뜻) 여부를 사정·평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의견이나 공표내용 자체가 거짓 아닌 진실인지의 여부를 가려낼 객관적 방법이 손쉽지 않기도 하지만 「사실보도」는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취재기자가 진실과 진상을 알고는 있으나 「보도용」으로 이용 가능한 소재라고는 허위, 날조, 거짓말이 분명한 의견이나 공표밖에 없다고 하면, 그 의견표명 당사자나 공표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사실보도」는 거짓과 허위를 알면서도 정직하게 곧이 곧대로 보도하게 된다. 보도자료 기자나 그의 언론기관에 제공되는 성명이나 공표문의 뉴스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면 (보도하지 않는 자유와 재량이 언론기관에 전적으로 보장돼 있는 조건 하에서는) 뉴스원의 상대적 지위와 내용의 진실성이라고 볼 수 있다. 뉴스원의 위계와 사회적 위치가 높을수록 내용의 진실성 여부는 뒷전에 밀리고 반대로 위계와 위치가 낮을수록 진실성의 중요도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허위, 날조, 거짓말의 「뉴스가치(?)」는 누가 그것을 발설하느냐에 좌우되는 바 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신문편집국장이 이 딜레마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즉 「분명한 거짓말이다. 나는 그것이 거짓인 줄 알고 있지만 보도하는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발설자가 고관현직이기 때문이다. 이 고관현직의 이름과 지위가 거짓말을 뉴스가 되게 해준다.」 이런 상황하에서, 직책과 지위가 진위나 허실에 상관없이 뉴스 가치판단의 주요기준이 되는 상황하에서는 언론이 제동을 건다면 고작해서 어느 면에 얼마만큼 어떻게 다를 것이냐 하는데 그치기 쉽다. 물론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블라코스 발행인이 당한 것과 같은 상황하에서는 취급방법에 의존하는 제동에도 한계가 있다.

「사실보도」이면서도, 우리들이 사실보도와 구별해서 규정한 「진실보도」의 성격을 농도질게 띤 경우를 이른 바 「미국방성기밀문서 보도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문서는 25 년간에 걸쳐 월남전 문제전반을 다룬 7,000 페이지의 방대한 기밀문서로, 무엇보다도 그것은 월남전에 관한 정책결정을 관변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특히 국방성 내에서 정책의 선호가 어떻게 결정되어갔는지의 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뉴욕타임즈지의 이 기밀문서 보도는 그 내용의 「사실적인」 요약보도가 아니고서 그 기밀문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서도(사실보도), 월남전에 관한 정책결정의 실체에 있어 대통령과 행정부 지도자들의 표리부동, 기만성, 속 다르고 겉 다르기, 즉 국민과 세계를 상대로 공언한 내용과 정책수립의 뒷전에서 비밀리에 실제로 이뤄진 것을 대비하여 그 기만성을 입증하자는데(진위와 허실을 파헤치는 「진실보도」)그 주안점이 있었다. 그렇게 하려는 과정에서 「사실에 충실한 진실보도」가 더러는 희생되기도 했다. 왜냐하면 관변의 월남전연구기밀문서를 관의 이중적 기만성 폭로에 이용하려 하니 첫째로, 공개적으로 공언했거나 현실적으로 나타난 자료를 추가원용하지 않을 수 없었고 둘째로, 기밀문서중의 일부 주장을 의식적으로 빼놓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이것은 마치 레이건 대통령이 전략무기에 있어 미국의 대소열세를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이유는 어느 취재기자가 미국민에게 국방예산의 대폭증액을 설득시키기 위한 양국의 실제 전략전력실상과는 거리가 먼 호도술에 불과하다고 간파했다고 해서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의 열세를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숫자를 「사실보도」에서 의식적으로 누락시키는 것과 유사하다 하겠다.) 예컨대 통킹만 결의(사실상 존슨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백지위임이었고, 이 국방성 기밀문서보도로

기만성을 입증하려고든 NYT 와 워싱턴 포스트지는 다같이 사실을 통해 지지표명)가 기사에서 나온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존슨 행정부가 이 숙명적인 충돌사건을 피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문서중의 부분을 의식적으로 빼놓고 대신 이 기밀문서 속에서는 실제로 언급하지 않은 미국의 대 라오스 도발을 통킹만 사건 유발의 증거로 추가했다.

「진실보도」에서는 이같이 외적인 자료가 첨가되는가 하면 본래의 메시지 중에 일부를 의식적으로 탈루시키기 때문에 「사실보도」 못지 않게 진상으로부터의 일탈을 범할 위험이 없지 않다. 좌우간 재래적 관행에 따르는 「사실보도」 체제는 도전과 비판을 받았다.

그래서 일찍이 제 2 차 세계대전 중에 바로 「피동적 객관」 보도의 본산이자 본보기라 할 AP 통신의 총지배인 켄트 쿠퍼(Kent Cooper)는 AP 특파원들에게 보내는 훈령에서

「표면적인 사실의 밑바닥에 파고들어 진정한 얘기를 전달하는 직접적, 사실적, 전적으로 객관적인 보도」 체제를 종용하기도 했다. 또 매카디 선포가 한창 일기 시작한 1953 년 타임지는 「객관성의 맹목적 숭배」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자명한 사실들이 스스로 증명하게 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언론인들이 사실들을 적절히 정리, 배열하고 관조할 수 있게 하고 해석을 가하지 않는 한-스스로 증명하는 일이 아주 드물다」고 타임류의 보도체제를 변호하고 나섰다. 타임지의 「사실보도」 맹신에 대한 비판에는 물론 반론이 제기됐다. 기존 신문과 시사 잡지들이 진실과 진상을 보도하지 않는다면 1964 년에 랄프 긴즈버그(Ralph Ginzburg)를 편집인으로 창간된 팩트(FACT)지는 『타임지 · 픽션주간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창간호주제로 다뤘다. 사실적인 시사주간지가 아니어서 편집과정에서 게재내용이 픽션화했다는 강력한 비판이다. 객관적 사실증시와 사실을 근거로 한 해석의 대결인 것이다. 윌 어윈(Will Irwin)은 일찍이, 아마 최초로, 「사실보도」에 따르는 예기치 않았던 문제점을 간파하고, NYT 보도의 사실적 진실성(truthfulness)을 극구 찬양하면서도 「그 결함은 진상들을 외면한 데 있다」고 충실한 사실적 보도편중을 비판했다. 그는 이런 「사실보도」란 뉴스를 전달하는 것 외에는 언론이 어떠한 책임도 떠맡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30 년대의 경제공황, 나찌 독일 제 3 제국의 등장, 2 차대전, 동서냉전. 남북긴장 등 세계적 사태발전과 국내적으로는 매카디 돌풍, 금본위제폐기, 워터 게이트 사건 등이 미국에서는 직선적 사실보도에의 집착을 점점 어렵게 하였고 진상을 규명하고, 허위를 들추어 내고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언론이 이바지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언론내외의 소리가 높아져 왔다. 「사실보도」는 다른 각도에서도, 즉, 그 근간을 이루는 「객관성」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문제제기에서도 시련을 겪어왔다. 일부 학자들은 「객관성」이란 언론인들의 자위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본다. 게이 터크맨(Gaye Tuchman)은 그의 「Objectivity as Strategic Ritual」에서 논제 그대로 「객관성」이란 언론인들의 전략적 요식절차로서 「마감시간, 명예훼손소송, 상사들의 견책 등, 위험을 극소화하기위해 객관성이라는 실무적 일반개념」을 필요로 한다고 실증적 연구결과로서 단언했다. 또 다른 한 학자는 객관성의 원칙에 따르면 역할수행의 평가기준이 보도의 알맹이가 아니라 그 보도의 기법준수 여부에 있기 때문에 언론인들과 그들이 종사하는 보도기관들이 과오, 오보, 편향, 기타 직업상 어긋나는 형태의 실책을 범했을 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위 수단을 보장해준다고 주장했다. 또 펜실버니아 대의 조지 거브너(George Gerbner) 교수는 모든

뉴스는 객관적 사실보도가 아닌 의견의 표현이라고 단정하는가 하면 월터 크롱카이트(Walter Cronkite)에 웃도는 전파저널리즘의 스타인 고 에드워드 R. 머로(Edward R. Murrow)도 「어느 기자를 막론하고 완전히 객관적일 수 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나는 본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모두가 우리들 경험의 총화의 포로가 돼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저명한 정치평론가인 데이비드 브로더(David Broder)(WP)는 「객관성이란 편견을 의미하는 환상적 용어」에 불과하다고 불가론을 제창한다. 요는 일선에서 뛰는 취재기자에서부터 편집인·발행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이트키퍼(Gatekeeper)들이 뉴스 제작과정의 요소요소에서 정도의 차가 있을 뿐 인간이기 때문에, 경험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인간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운위하는 것은 허구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에 충실한 사실적 진실보도이든, 진상규명·진위판명·허실추구에 역점을 둔 「진실보도」이든 객관성은 그렇게 성취불가의 궤변이라고만 내동댕이칠 수 없는 언론의 목표이자 가치있는 방법론으로서 논의돼야 된다.

III. 「진실보도」로의 지향

「사실보도」와는 구별되는, 진상을 파헤치고 진실을 추구하는 의미에서의 「진실보도」는 「사실보도」의 보완 내지는 대안으로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함에 있어 첫째 어떠한 보도체제를 취하느냐와 둘째, 우리들의 언론의 목표이자 가치있는 방법론으로서 보존·추구해야 할 객관성이 그러한 보도체제와 양립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보도체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언론체제적 여건이 필요한 가도 도외시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보도양식을 지향 추구하려는 언론의 자세가 확립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객관적 여건이 부재인 경우엔 무의미한 공론에 불과하기 쉽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여기서 「사실보도」의 보완 또는 대안으로서 논하고자 하는 보도체제는 거두절미하고 조사적 해설보도체제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진실보도」를 위한 조사적 해설보도체제는 「사실보도」 외적인 추가적 소재수집은 물론, 설명과 해석과 분석을 요하게 되므로 주관의 개입, 편견과 편파성의 개입, 사실화적 의견삽입, 객관성의 도외시 등 위험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객관성과 어떻게 양립 시키느냐가 성패의 열쇠가 된다. 「사실보도」의 절대 제창자들은 진실을 위한 해설보도체제가 사건, 편향, 편견, 왜곡, 추정, 억측, 제창, 그리고 설득에서 초연하게 유리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즉, 객관성과는 양립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보도」든 우리들이 그 보완 내지는 대안으로 추구하는 「진실보도」든,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주관의 개입을 완전무결하게 배제할 수는 없으며 객관성을 너무 협의로 정의하지 않는 한, 사실보도와 조사적 해설보도(진실보도)에 있어 다 같이 언론인들의 직업윤리상의 준수를 요하는 목표와 가치로서, 또 일정한 절차적 기법을 요하는 방법론으로서 기댈 수 있다. 많은 학자들과 언론 종사자들이 이런 유의 객관성, 너무 협의로

엄격하게 규정짓지 않는 객관성은 조사적 해설보도에서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필자도 그렇게 생각한다. NYT 지의 레스터 마이켈(Lester Markel)은 뉴스처리에 있어 (1) 기본사실 (사실보도) (2) 이 사실들에 대한 해설(해설보도-진실보도), 그리고 (3) 이 사실들에 대한 논평(사설) 등 세가지 접근방법이 있다고 전제하고 「사실보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어프로치에 있어서도(그러나 세 번째의 논평과는 달리)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진실보도」를 위한, 사실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맥락에 관조해서 풀이를 가하는 해설보도는 「어느 사태의 배경과 지식, 그리고 제일차 사실 및 그 연관 사실들에 근거한 객관적인 사정 (objective appraisal)」이라고 보고있다. 여기서 마이켈이 말하는 「배경」이란 기본사실 외적인 배경을 이루는 비시사적 정보를 지칭하며, 「지식」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단순한 관찰이나 경험을 통해 피상적으로 알게 되는 「acquaintance-with」가 아니고서 추상적이고 분석적 요소를 띤, 어느 정도 체계적인 knowledge-about 임에 틀림 없다. 사회학자 로버트·머튼(Robert K. Merton)은 acquaintance-with 의 과정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흔히 구체적이고 기술적이기 십상이고(사실보도), knowledge-about 의 과정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추상적이고 분석적인 경향을 띤다 (진실보도를 위한 해설)고 본다. 그에 의하면 사람들은 직접 경험이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직각적인 이해를 통해 acquaintance-with 를 이루고, 반면에 공식적인 교육이나 체계있는 조사를 통해 사물과 사태에 대한 knowledge-about 를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로시코(Roshco) 교수는 머튼과 궤를 같이 하는 입장에서, 모든 뉴스 즉 단순한 사실적 보도는 시사적인 acquaintance-with 라고 정의하고, 뉴스는 knowledge-about 의 뒷받침을 받지않는 한, 사실의 피상적 보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마이켈은 knowledge-about 가 아닌 그냥 knowledge 란 용어를 사용했지만, 엄격히 말해서 단순한 사실적 보도와는 무관하다고도 할 수 있는 비시사적 배경정보가 그의 해설에서 요청되기 때문에 그의 knowledge 는 머튼이나 로시코의 knowledge-about 와 일치하게 된다. 객관성을 너무 협의로 정의하지 않고 도널드·맥두걸(Donald McDougal) 교수의 말대로 「대상물(즉 뉴스 사태)에 대한 인식 (취재를 통한보도)과 그 대상물 자체 사이의 실질적인 일치」로 정의한다면 이 「실질적인 일치」는 언론인의 직업윤리와 강령준수의 자세에 따라 충분히 성취될 수 있다고 본다(여기서 괄호 속의 부분은 본 필자가 부기한 것이다). 「실질적인 일치」를 의미하는 객관성이라면 순수한 사실보도는 물론, 진실보도(조사적 해설보도)에서도 다같이 실현될 수 있다. 맥두걸 교수는 객관성은 가능한 가라는 의문에 가능하다고 자답하고 있다. 즉 사물이나 사태에 대한 전면적인 진실(진상)로서의 객관성의 의미에서가 아니라, 또 모든 주관적 요인들의 완전 배제를 의미하는 객관성의 의미에서 아니라, 「실질적인 진실(진상)로서의 객관성의 의미에서 가능하다고 단언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대중매체와 그 종사자들의 힘에 미치지 않는 불가능은 아니라는 것이다.

로시코 교수는 과학적 연구방법에 비유해서 객관적인 (조사) 해설보도가 가능하다고 본다. 즉 기자가 어떤 성명이나 발표의 허위를 입증하는 배경 설명적인 정보를 첨가한다고 해서 사실로서 보도된 그 성명이나 발표가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서, 다른 학자나 연구자의 가설을 정확히 진술하고서는 그 다음에 반증을 들어 논파하는 과학적 연구자와 같은 구실을 한다고 해설보도를 변호한다. 다른 학자나 연구자의 가설이나 학설을

실증을 들어 입증하거나 반증을 제시하여 논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실보도」를 위한 조사적 해설 보도자는 「실질적」이라는 신축성 속에서 객관적으로 제시된 배경정보와 knowledge-about 로써 객관적으로 충실하게 보도되는 사실로서의 acquaintance-with 를 옳다고 뒷받침할 수도 있고 반대로 틀렸음을 입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과학적 연구방법에 의한 연구에서도 연구자의 직관적이고 창의적 능력이 가미돼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론인들에게도 진실과 진상을 추구하고 허구와 책략을 들추어 내는 것은 실정을 잘 알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수용자 대중에게 서브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다 하겠다. 요컨대 조사적 해설보도 (진실보도)에 주관적인 요소들이 끼어들 소지를 완전배제 할 순 없다. 그러나 해설이 사건이나 사태의 「실질적인」 진상에 근거하고 또 이러한 근거들이 추적입증이 가능하도록 해설 보도자에 의해 기사 속에서 명시되고, 또 객관적으로 사정되는 한에서 우리들이 제창하는 조사적 해설보도는 객관성을 잃지 않은 「진실보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IV. 「진실보도」를 위한 여건

「진실보도」(조사적 해설보도)를 추구하여 얻는 것이라 함은 그 실현에 장애 요소들이 가로놓여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피상적인 관찰이나 현장취재나 배포되는 보도자료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사와 연구, 그리고 단순한 「수재」가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의 「취재」를 통해 acquaintance-with 가 아닌 knowledge-about 의 집적을 요하는 보도체제이기 때문이다. 가장 원천적인 장애요인은 보도업무에 내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무엇보다 먼저 시간(마감), 공간(지면과 에어타임), 그리고 경제적 자력 (예산)의 한정에서 오는 장애 요인들이다. 거기에 덧붙여 언론인은 사법경찰관·검찰관·법관이나 입법정치인들과 같이 사법적 수단이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사와 연구에 있어 자료제출, 증언 등을 임의로 채취할 수 없다. 이 애로를 극복하는데 진일보한 법제적 장치가 「언론기본법」에 규정된 정보청구권인데, 현행조항에는 막연하고 광범위한 예외규정이 있어 큰 도움이 될지 의문이 없지 않으며, 특히 소제기를 통한 구제조치에 관해 본법은 물론 동시행령에도 규정돼 있지 않아 지극히 막연하다. 청구권에서 4개조항의 예외규정이 적용된다면 정보청구권행사로서 무엇을 관서로부터 입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심지어는 언론이 「공표 전에 모든 공표사실의 진실성, 내용 및 출처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데, 현행규정 하에서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청구가 이뤄질 수 있을지 문제이다. 이런 예외규정과 시행령의 구제조치 제외는 국가안보에 관한 기밀문서 등의 제시만 예외규정을 두고, 정보청구일로부터 10일 내의 처리의무, 법원제소권과 법원의 공문서분류권한여부, 위법으로 공문서제시를 거부하는데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한 미국의 「정보자유법」이나, 정보제시 거부 이유의

입증을 정부측에 책임지우고 정보고등판무관에게 정보제시여부를 둘러싼 분쟁의 중재권을 부여한 캐나다의 「정보에의 접근 및 개인인적사항정보보호법」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 같다. 단순한 사실보도를 넘어서 진실을 추구하고 허위를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즉 조사적 해설보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합을 전제로 하는 다양성이 바람직하다(다양성이라 함은 대중매체의 경영·소유형태와 그 수요를 일컫는다). 존 밀턴(John Milton)이 이르는 바 이성의 경합이나 사상의 자유시장이 보장된다면, 진실의 추구하고 허위의 노출은 그만큼 손쉬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밀턴의 명언대로 「자유롭고 공개적인 대결에서 진실(진리)이 패주한 적이 있는지 어느 누가 알고 있느냐」이기 때문이다. 이 명언의 밑바닥에는 이성이 경합하고 의견이 각축을 벌이게 되면 가장 진실에 가까운 것이, 가장 진리에 접근한 것이 여타를 물리칠 것이라는 굳은 신념이 깔려있다. 그리고 리프만 해석대로 밀턴의 명언적인 도전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진실(진리)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재하고 있다는 신념도 표출한 것이다. 자유롭고 공개의 장에서 의견의 각축이 이뤄지면 기어코 진실(진리)이 득세할 것이라는 신념이다. 미국의 언어 커뮤니케이션학회가 1972년에 채택한 「민주사회내의 자유롭고 책임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장전」은 의견과 아이디어의 자유경쟁에 의한 진실추구와 궤를 같이 하는 항목을 두고 있다. 즉, 「우리 학계는……자유의 편에서 과오를 범한다 해도 그로 인한 해악은 별로 없고 상당한 유익이 뒤따를 수 있는데 반해 만약 부자유(억압)의 편에서 과오를 범하게 되면 우리는 별로 없고 상당한 해악이 뒤따를 수 있다는 대명제를 지지한다」고 했다. 다양성의 보장 속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논쟁과정에서 과를 범한다 해도 해독은 별반 없으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의견의 경합과 아이디어의 각축을 통해 진실을 찾으려면 다양성의 여건이 중요하다 하겠다. 진실과 정치는 아귀가 잘 맞지 않는다고들 한다. 해너·아렌트(Hannah Arendt)의 말을 원용하면 : 「진실과 정치는 서로 사이가 그리 좋지 않다. 내가 아는 한에서는 어느 누구도 정치적 미덕가운데 이제까지 진실성을 헤아려넣은 사람이 없다……정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진상은 폭군과도 같은 성격을 지닌다. 그래서 정치인은 진실을 혐오하기도 한다」. 다양성 속에 진실의 표출이 두렵지 않아야 우리들이 논해온 이성의 경합과 의견의 각축을 통해 「조사적 해설보도」로 진실추구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것은 법적 및 법외적 언론체제의 현실과 여건에 따라 좌우되는 바 클 것이다. 「진실보도」를 실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다른 요소로는 수용자 대중의 커뮤니케이션 행태를 들 수 있다. 윌버 슈람(Wilbur Schramm)은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질을 보장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하는 논문에서 언론기관, 정부, 그리고 수용자 3자를 들었지만 그는 수용자를 통한 질적 보상책임에 선호를 보였다. 그에 의하면 수용자 대중이 커뮤니케이션 역학관계에서 주동적 구실을 하는데 네 가지 선행필요 조건들을 열거하고 특히 「수용자들이 그들의 의견을 언론기관에 알리는 책임」을 들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피드 백(feed back)작용으로서의 의견전달이 아니고서, 신문 잡지의 구독, 라디오청취 및 텔레비전 시청 여부를 통해 「행동으로 의견을 전달」하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소비자가 사주지 않는 상품과 같이 읽어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고, 시청해 주지 않는 매체는 진실보도의 요구를 절실히 깨닫게 될 것이다.

V. 맺는 말

「진실보도」는 내용의 진부에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충실히 보도하는 형태인 경우 「사실보도」와 다를 바 없지만 진부를 가리고 허구를 드러내기 위해 비시사적 배경정보를 추가하여 보도되는 사실들과 이 추가 정보들을 근거로 해서 객관적으로 평정할 때 「사실보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보도형태가 된다. 이러한 진실보도는 단적으로 말해서 조사적 해설보도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다. 이런 조사적 해설보도를 통해 진실을 알고 실정에 밝은 수용자 대중이 민주시민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언론인들의 자세는 물론 그것이 결실할 수 있는 객관적 여건이 수반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조사적 해설보도로서의 「진실보도」는 공론에 그치기 쉽다.

-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미국 인디애나 신문대학원 및 컬럼비아 대학 신문대학원 수학
- 미국 컬럼비아 대학 신문대학원 플브라이트 교환교수
- 현재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